

이의신청 결정서

제 호		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
주문		
원처분 요지		
이의신청 취지		
결정 이유		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안내사항

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(原處分: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)을 대상으로 하고,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(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)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(피청구인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) 또는 시·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(피청구인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인 경우)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).
-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소송법」 제9조).